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금정구 구보 호외 제 361-6 2020. 11. 10.(화)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0-25호) ----- 2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0-26호) ----- 6

고 시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64호) ----- 10

공 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지정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020-1230호) ----- 11

| | | | | | | | | |
|-----------|--|--|--|--|--|--|--|--|
| 회람 | | | | | | | | |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0-25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이유

- 저출산·고령화로 헌혈가능 인구 감소와 코로나19확산 등 신종 감염병의 잦은 출몰로 혈액수급 불안정 및 수혈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혈권장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역 헌혈 문화 확산 도모

3. 주요내용

-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안 제7조 제1항)
“개인과 단체” → “단체”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안제7조제2항)
“구청장은~인정받을 수 있다.”
-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안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 → “제1항 및 제2항”
- 포상에 관한 조항 수정(안 제8조)
“헌혈과 관련하여” → “구 관내에서 최근1년 이내에 헌혈권장사업에”
“사람 및 단체” → “구민 또는 단체 등에게는” “따라 포상을” →
“다른 포상을 할”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전화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개인이나 단체”을 “단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
위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헌혈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
으며,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 중 “헌혈과 관련하여”를 “구 관내에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권장사업에”로, “사람 및 단
체에게”를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는”으로, “따라 포상할”을 “따른 포상을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u>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p> <p>제8조(포상) <u>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p> | <p>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 ----- <u>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u></p> <p>② <u>구청장은 헌혈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u> ----- -----.</p> <p>제8조(포상) ----- <u>구 관내에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권장사업에 ----- 구민 또는 단체 등에게는 -----</u> ----- <u>따른 포상을 할 -----</u> -----.</p>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0-2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발의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이용자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개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노력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체계적 사업추진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전화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충전과 동력기술이 결합된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기준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1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교통공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범천동)

2. 공사 내용

- 압송관로(D=150mm) 설치

3.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0. 11. 10. ~ 2023. 1. 24.

4.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 일자

- 2020. 11.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020-1230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영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지정사항

| 금융기관명 | 금고명 | 취급업무 |
|-------|------|---|
| 부산은행 | 주 금고 | 일반회계, 기금 5개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
| 농협은행 | 부 금고 | 특별회계 5개 (의료급여, 지하수관리, 주차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정비촉진) |

2. 약정기간 : 2021. 1. 1. ~ 2023. 12. 31. ▷ 3년간